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2006. 6. 1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가 재정 운용상황 공시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 자치법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변동사항을 시정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같은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2006. 5. 26. ~ 6.15)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예산편성

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제4조(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 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자원배분기준과 자원배분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소관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자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제6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 3 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원배분방법 및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영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기금운용

제16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및 존속기한) ①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9조(회계관직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담당주사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기본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제25조(공시구분)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공통공시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은 특수공시로 한다.

제26조(공시시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용상황(이하 “재정운용상황”이라 한다)의 공시 시기는 매년 8월에 실시(이하 “정기공시”라 한다)하며,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공시대상) ①조례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공시 중 공통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통합재정정보
 8.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9.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10.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정기공시 중 특수공시를 하여야할 사항은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공시방법) ①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시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공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4.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5.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사항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p> <p>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예산편성</p> <p>제4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예산편성</p> <p>제3조(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현행	개정안
<p>제5조(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자원배분기준과 자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p> <p>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소관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자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p>제7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p>	<p>제4조(예산편성지침) ①구청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8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국장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자원배분기준과 자원배분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p> <p>제5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소관국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자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하는 서류 <p>제6조(예산안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액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p>

현행	개정안
<p>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p> <p>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배분방법 및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p>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p> <p>제7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배분방법 및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현행	개정안
<p>5.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의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4급이상 관 계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 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 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의 과반수이상인 되도록 한다.</p> <p>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p> <p>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며, 그 의장이 된다.</p>

현행	개정안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1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안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p>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p> <p>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4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기금운용</p> <p>제17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기금운용</p> <p>제16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및 존속기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구청장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제1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 수 있다.</p> <p>⑤구청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배정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9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p> <p>제20조(회계관직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기금관리관 : 행정관리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국장 3. 분임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담당주사 <p>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p> <p>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2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p>	<p>제18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p> <p>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p> <p>제19조(회계관직 지정)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담당주사 <p>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p> <p>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제2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p>

현행	개정안
<p>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제21조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독표, 자금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p> <p>③자금기본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p> <p>④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은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기 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p> <p>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p> <p>②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p>
<p>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제23조제1항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p>제23조(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p>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개</p>	<p>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p> <p>4.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에 관한 사항</p> <p>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시</p> <p>제25조(공시구분)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공통공시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은 특수공시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5조(주민공개 횟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18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p>	<p>제26조(공시시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상황(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시시기는 매년 8월에 실시(이하 "정기공시"라 한다)하며,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p>
<p>제26조(주민공개대상)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제27조(공시대상) ①조례 제7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정기공시중 공통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 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3. 당해 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 연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 연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 연도 공유재산 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 연도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8. 당해 연도 공기업 운영계획 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통합재정정보 8.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9.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10.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② 정기 재정운영상황의 특수공시를 하여할 사항은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결산개황 	

현 행	개 정 안
<p>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p> <p>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p> <p>4.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상황</p> <p>5.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p> <p>6. 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p> <p>7. 전년도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p> <p>8. 전년도 공기업 운영 상황</p> <p>9.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p> <p>③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p> <p>제27조(공개방법)①재정운영상황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구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 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p> <p>제28조(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8조(공시방법) ①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시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9조(주민공시의 제한)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p> <p>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p> <p>3.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p> <p>제29조(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임구청장은 제27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한다.</p>	<p>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p> <p>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p> <p>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p> <p>4.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p> <p>5.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p> <p>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